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경만선 의원 외 10명

나. 의안번호 : 제2130호

다. 제출일자 : 2021. 2. 3.

라. 회부일자 : 2021. 2. 9.

## 2. 제안사유

- 재난 상황으로 인하여 위기에 빠진 공항버스 사업자에 대해 그 손실이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의 사유로 공항버스의 한정면허 사업자에 대하여 손실이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

할 수 있는 조항 신설 (안 제8조제3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의 사유로 공항버스의 한정면허 사업자 보조나 용자 절차시 기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방법 및 절차 준용 조항 신설 (안 제8조제4항)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1. 2. 16 ~ 2021. 2. 23
- 제출의견 : 의견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 원안가결
  - 공항버스는 시내·마을버스와는 달리 필수 대중교통수단은 아니지만, 항공편 이용자의 이동권 보장과 재난상황의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업계의 위기극복 지원을 통한 중단 없는 교통편의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례적 재난상황의 경우, 그 손실이나 비용 일부를 지원·용자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 가. 개 요

- 동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사유로 이용객 감소 및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공항버스 한정면허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항버스의 안정적인 운영 및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 참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내용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나. 검토의견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가운데 이용승객 감소에 따른 수입 감소로 인해 대중교통 분야의 경영난은 심각한 수준임

- 서울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승객수는 전년대비 각각 22.7%, 27% 감소하였고, 운송수입금 또한 각각 22.4%(△2,758억원), 26.5%(△635억원) 감소<sup>1)</sup>한 것으로 나타나 상당수 노선이 정상운행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면서 버스업체 운영이 힘든 상황임
- 특히, 공항버스의 경우 항공편이 막히고 여행수요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20년 총 수송인원은 212만명으로 '19년 1,454만명 대비 85.4%(△1,242만명)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 운임수입은 '19년 1,571억원에서 '20년 225억원으로 85.7%(△1.346억원) 감소되는 등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버스 중 가장 큰 손실을 입었으며,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입국자 전용 특별수송 차량(10대)을 배차·운영하는 한편 서울 전체에 6개 노선 12대만을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있음

※ 참고 :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및 운임수입 감소

구 분		소계	시내버스	마을버스	공항버스
승객수 (천명)	2019년	1,920,919	1,479,364	427,017	14,538
	2020년	1,457,499	1,143,752	311,629	2,118
	감소	463,420(△24.1%)	335,612(△22.7%)	115,388(△27%)	12,420(△85.4%)
수 입 (억원)	2019년	16,284	12,321	2,392	1,571
	2020년	11,546	9,564	1,757	225
	감소	4,738(△29.1%)	2,758(△22.4%)	635(△26.5%)	1,346(△85.7%)

1) 서울시 보도자료, 「코로나19로 서울버스 승객 24%↓...공항버스는 최대 99.1% 줄어 폐선위기」, 2021.2.10.

-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해소를 위해 2020년 한해 동안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의 방역 및 손실 지원 예산을 편성한 바 있으나, 공항버스는 별도의 지원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고

지난 3월 22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합동 발표한 1조 규모의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지원 내용에 따르면 공항버스 운수종사들에 한해 1인당 5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항 버스를 직접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는 별도의 지원대책이 없는 실정임

※ 참고 : 서울시 도시교통실 추경 세출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추경				비고
		1회	2회	3회	4회	
총 계		14,317	7,404	40,495	18,947	
지하철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	931	-	2,726	13,568	방역비 및 운영비 지원
	지하철 9호선 2·3단계구간 위탁 운영관리	279	-	432	1,964	
	우이신설 도시철도 재정지원	141	-	289	2,530	
	1~8호선 코로나19 대응지원	3,923	-	15,611	885	방역비 및 임대료 지원
버스	버스분야 감염예방대책	9,043	-	10,437	-	방역비 지원
	마을버스 재정지원	-	-	11,000	-	운영비 지원
택시	코로나19로 인한 법인택시업체 긴급 경영개선비 지원	-	7,404	-	-	운영비 지원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사유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항버스 한정 면허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항버스 업계의 최소한의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2)에서 정의하고 있는 “재난”은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의 감염병 외에도 다수의 감염병<sup>3)</sup>과 자연재난은 물론 교통사고와 같은 사회재난까지 포함하고 있어 재정지원 근거가 광범위해질 우려가 있고,

공항버스 한정면허 사업자에 대한 자금 보조는 다른 한정면허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